

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정성미(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)

- ◎ 2014년 3월 명목임금은 1.8% 증가
 - 2014년 3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,05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.8% 증가
 -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(3,237천 원)은 정액급여(3.1%), 초과급여(8.8%)는 상승한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.0% 증가
 - 반면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7.8% 감소
 - 임시·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상승률은 2.5% 상승하여 1,388천 원을 기록
 - 2014년 3월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의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둔화

- ◎ 2014년 1~3월 명목임금은 2.9% 상승
 - 전년동평균대비 0.8%p 감소한 수준으로 상승폭이 둔화
 -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정액급여(3.2%), 초과급여(6.8%), 특별급여(0.4%) 모두 상승한 영향으로 2013년 1~3월 평균대비 2.9% 상승하였지만, 전년동평균(3.7%)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
 - 임시·일용근로자는 2.8% 상승한 1,416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하였고, 이는 전년

동평균대비 2.7%p 감소한 수준

◎ 2014년 1~3월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.7% 상승

- 전년동평균대비 0.5%p 상승
- 2014년 1~3월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.2%로 2013년 1~3월 평균 수준인 1.5%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
- 2014년 1~3월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지수 모두 전년동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지만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폭이 더 큰 영향으로 실질임금 증가율은 전년동평균(2.2%)대비 낮은 수준인 1.7%를 기록
- 한편 2014년 3월 실질임금은 0.5% 증가하였는데, 이는 명목임금 상승률이 소폭 증가한 영향이 작용

〈표 1〉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: 천 원, 2010=100.0, %)

|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| | | | 1~3월 평균 | 3월 | 1~3월 평균 | 3월 | |
|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| 2,844 (1.0) | 2,995 (5.3) | 3,111 (3.9) | 3,164 (3.7) | 3,000 (4.1) | 3,256 (2.9) | 3,054 (1.8) | |
| 상용 근로자 | 임금총액 | 3,019 (-0.9) | 3,178 (5.3) | 3,299 (3.8) | 3,346 (3.8) | 3,174 (4.0) | 3,237 (2.0) | |
| | 정액급여 | 2,341 (4.8) | 2,470 (5.5) | 2,578 (4.4) | 2,559 (4.7) | 2,572 (4.9) | 2,642 (3.2) | 2,651 (3.1) |
| | 초과급여 | 179 (-8.4) | 181 (1.0) | 184 (1.7) | 176 (0.8) | 184 (-1.6) | 188 (6.8) | 200 (8.8) |
| | 특별급여 | 498 (-19.3) | 527 (5.8) | 537 (1.8) | 611 (1.1) | 418 (1.1) | 613 (0.4) | 386 (-7.8) |
| 임시·일용근로자 임금총액 | 1,215 (15.1) | 1,293 (6.4) | 1,377 (6.5) | 1,377 (5.5) | 1,353 (5.2) | 1,416 (2.8) | 1,388 (2.5) | |
| 소비자물가지수 | 104 (4.0) | 106 (2.2) | 108 (1.2) | 107.5 (1.5) | 107.6 (1.5) | 108.8 (1.2) | 109.0 (1.3) | |
| 실질임금 증가율 | -2.9 | 3.1 | 2.6 | 2.2 | 2.5 | 1.7 | 0.5 | |

주: 1) (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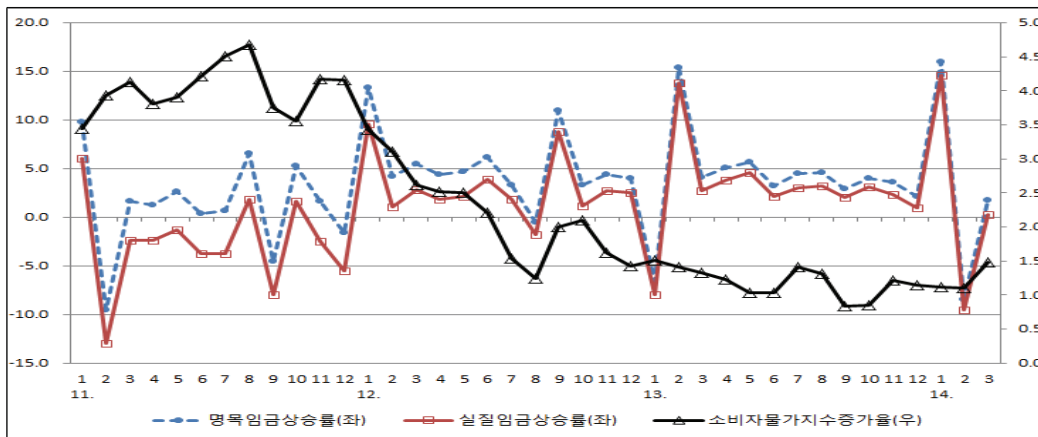
2) 1~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
3) 초과급여는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 특별급여는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함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; 한국은행, <http://ecos.bok.or.kr/>

[그림 1] 임금관련 주요 지표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: 천 원, %, 2010=100.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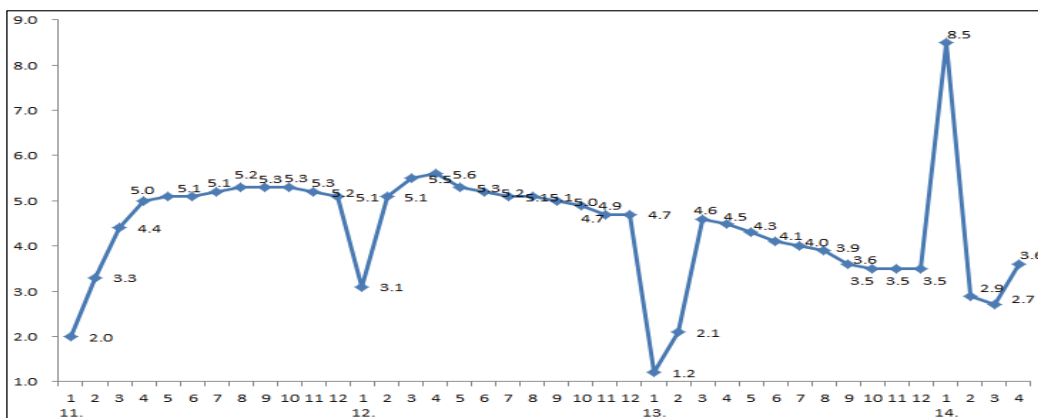
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◎ 2014년 4월 협약임금 인상률은 3.6%

- 2013년 4월 인상률(4.5%)에 비해 0.9%p 하락함
- 2014년 4월 임금결정진도율은 5.6%로 전년동월인 7.6%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

[그림 2]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

(단위: %)



주: 1)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, 특별 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.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.
 2)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.
 자료: 고용노동부 e-나라지표, www.index.go.kr

- ◎ 2014년 3월 근로시간 2.9% 증가
 - 월력상 근로일수가 1일 증가한 영향으로 2014년 3월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5시간(2.9%) 증가
 -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80.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.5% 증가한 반면, 비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16.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.0% 감소

- ◎ 한편 2014년 1~3월 평균 근로시간은 0.4% 감소
 - 2014년 1~3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0.1시간으로 전년동평균(170.7시간)에 비해 0.6시간 감소
 - 2014년 1~3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전년동평균대비 0.1%(175.2시간) 증가한 반면, 비상용근로시간은 5.2%(120.5시간) 감소해 전체 근로시간 감소에 비상용근로시간이 주요한 영향을 미침
 - 상용총근로시간이 소폭 증가한데는 초과근로시간의 증가(5.0%)가 주요한 원인

〈표 2〉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

(단위: 시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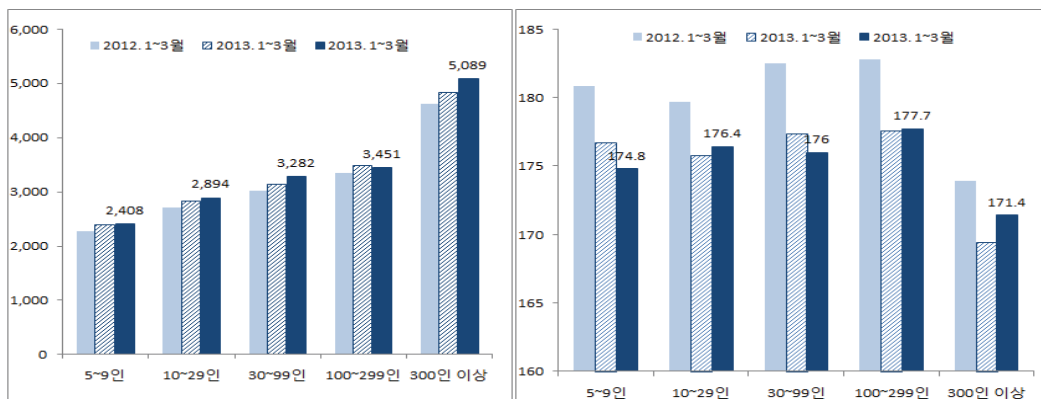
| | 2012 | 2013 | 2014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| | 1~3월 | 3월 | | |
| 전체 근로시간 | 174.3 (-1.1) | 172.6 (-1.0) | 170.7 (-2.3) | 169.5 (-4.3) | 170.1 (-0.4) | 174.5 (2.9) |
| 상용총근로시간 | 179.9 (-1.2) | 178.1 (-1.0) | 175.1 (-2.6) | 174.8 (-4.6) | 175.2 (0.1) | 180.9 (3.5) |
| 상용소정실근로시간 | 167.2 (-0.8) | 165.6 (-1.0) | 163.2 (-2.2) | 162.3 (-4.5) | 162.6 (-0.4) | 167.8 (3.4) |
| 상용초과근로시간 | 12.8 (-5.9) | 12.5 (-2.3) | 11.9 (-6.3) | 12.5 (-6.0) | 12.5 (5.0) | 13.0 (4.0) |
| 비상용근로시간 | 122.3 (-0.2) | 122.5 (0.2) | 127.1 (2.5) | 119.7 (0.8) | 120.5 (-5.2) | 116.1 (-3.0) |

주: 1)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.
 2) 1~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 3) (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 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- ◎ 상용총근로시간 변화를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, 100인 미만 사업체 규모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반면, 300인 이상에서는 증가(그림 3 우측)
 - 이러한 영향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 규모의 상용총임금이 크게 증가

[그림 3] 1~3월 월평균 사업체 규모별 상용총임금(좌)과 상용총근로시간(우)

(단위: 천 원, 시간)



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.

- ◎ 2014년 1~3월 평균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(6.5%)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(5.7%), 제조업(5.6%)의 임금 증가가 두드러짐
 - 이 외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(4.7%), 하수·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(3.7%), 사업서비스업(3.6%) 등에서 임금이 상승
 - 반면 출판·영상·방송통신서비스업(-4.2%), 광업(-3.4%), 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(-1.8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-1.5%)에서 전년동평균대비 임금이 하락

- ◎ 2014년 1~3월 평균 근로시간 증감은 산업별로 상이함
 - 2014년 1~3월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(-4.2%), 운수업(-2.1%), 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(-2.1%),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(-1.7%), 광업(-1.6%)
 - 반면 교육서비스업(1.7%), 제조업(1.3%), 금융 및 보험업(1.1%), 여가관련서비스업(1.7%)에서는 근로시간이 증가

〈표 3〉 1~3월 월평균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(5인 이상 사업체 기준)

(단위: 천 원, 시간, %)

| | 2013년 1~3월 | | 2014년 1~3월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임금 | 근로시간 | 임금 | 근로시간 |
| 전 산업 | 3,164 (3.7) | 170.7 (-2.3) | 3,256 (2.9) | 170.1 (-0.4) |
| 광업 | 3,609 (6.6) | 178.9 (-3.6) | 3,488 (-3.4) | 176.0 (-1.6) |
| 제조업 | 3,488 (6.0) | 181.9 (-2.5) | 3,683 (5.6) | 184.2 (1.3) |
|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| 5,283 (3.5) | 171.8 (-1.9) | 5,586 (5.7) | 169.3 (-1.5) |
| 하수·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| 2,693 (4.7) | 178.8 (-3.1) | 2,793 (3.7) | 176.9 (-1.1) |
| 건설업 | 2,477 (6.1) | 155.9 (1.6) | 2,530 (2.1) | 149.4 (-4.2) |
| 도매 및 소매업 | 3,186 (1.4) | 171.5 (-1.3) | 3,197 (0.4) | 170.3 (-0.7) |
| 운수업 | 2,679 (6.5) | 175.0 (-3.6) | 2,685 (0.2) | 171.4 (-2.1) |
| 숙박 및 음식점업 | 1,744 (2.3) | 173.0 (-6.9) | 1,774 (1.7) | 174.5 (0.9) |
| 출판·영상·방송통신서비스업 | 4,103 (1.4) | 160.4 (-1.4) | 3,930 (-4.2) | 161.5 (0.7) |
| 금융 및 보험업 | 5,395 (1.4) | 161.3 (-1.5) | 5,430 (0.6) | 163.1 (1.1) |
| 부동산업 및 임대업 | 2,214 (0.4) | 189.9 (-2.8) | 2,318 (4.7) | 188.5 (-0.7) |
|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| 4,111 (1.1) | 160.6 (-2.8) | 4,380 (6.5) | 161.9 (0.8) |
| 사업서비스업 | 1,848 (4.3) | 169.4 (-2.2) | 1,914 (3.6) | 169.8 (0.2) |
| 교육서비스업 | 3,475 (5.3) | 149.1 (-2.0) | 3,563 (2.5) | 153.2 (2.7) |
|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| 2,676 (1.1) | 169.8 (-2.4) | 2,636 (-1.5) | 166.9 (-1.7) |
| 여가관련 서비스업 | 2,343 (8.4) | 153.9 (-0.9) | 2,422 (3.3) | 156.5 (1.7) |
| 협회·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| 2,258 (0.0) | 165.6 (-1.6) | 2,218 (-1.8) | 162.1 (-2.1) |

주: 1) ()안은 전년대비, 전년동평균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.

2) 1~3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.

3) 초과급여는 연장(야근근로 포함)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고 특별급여는 상여금, 성과급, 임금인상소급분,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를 말함.

자료: 고용노동부, 『사업체노동력조사』; 한국은행, <http://ecos.bok.or.kr/>